

국회의원회관 417 호 / 전화 784-5718, 788-2951,

019-207-9424, daejong68@hanmail.net (담당:김대중보좌관)



<첨부:감사원 통보,주의요구 문서 2 회, 국무조정실 향후계획,

정통부 8 월 20 일 대통령업무보고자료, >

o 감사원 "재난관리 종합무선체계 미확보" 지적

2 차걸쳐 국무조정실 통보 2002.6.29, 2003.1.29

o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담당 서기관:

결재않고 방치 7 개월

- 감사원 업무태만 문책요구"주의"(가장낮은 처벌)
- 232 억: 경찰청, 군 등 기발주와 계획금액

0 무선통합망 시스템계획도 미수립 상태인 지금
행자부와 국방부의 운영주체를 두고 다툼.

부처 이기주의 극치

, 긴급구조대 등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무선통합망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등을 실시했다면 금번 태풍 매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기관 공무원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7 개월
넘도록 낮잠 자게 했다는 것은 큰 문책사유이다.

단으로 인사 이동후 동일한 업무를 하였음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있어 부처 이기주의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와 담당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0. 9. 국무조정실 안전관리대책수립 재난관리 정부정책 심의
총괄과 조정 등을 함.

2002. 3 감사원 98.2.3 일 평택시 상수공사 붕괴시 재난신고 받은
기관들 통신망체계가 달라 605 명 일사불란한 구조못 함

o 2002. 6. 29 감사원통보.

이○○서기관 접수

(7 개월동안 방치, 업무태만으로 주의촉구)

감사원이 국무조정실에 재난대비 종합무선체계 미확보지적하고
대책강구 요청.

o 2002.11.4 이○○서기관 수해방지기획단으로 옮김

o 2003.1.29 감사원 :통보한지 7 개월이 지나도록 각 기관간 일원
화된 통합지휘무선체계 구축을 위한 주관부처 지정이나 관계 기관
협의.조정 등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촉구함.

"감사원:국무조정실에 관련자인 안전관리기획단 재난관리과
서기관에게 주의를 줄 것을 촉구함."

o 2003. 2. 7 주관부처 선정,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감사원 통보문을 책상서랍에 7개월동안 보관하여 업무태만 등으로
담당자 문책요구

o 2002.12.24 경찰청 주파수 공용통신장치 발주 165 억

o 2003 년 울산지방경찰청 TRS 구축계획 35 억

육군본부 계획 과학화 전투훈련 TRS 32 억,

o 2003.1.20 통합방위본부는 다른방재 기관제외한 행자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의 합의거처 "정부기관 통합통신망 구축 추진"있다

그결과 긴급구조기관인 다른방재기관과 통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자가 TRS 망을 국지적으로 구축 또는 확장함으로써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에 어려움 초래하고
국가자원인 주파수 효율적인 이용불가.

통신망의 중복구축 예산낭비초래함.

o 2003. 8. 21 이○○ 담당자 규제개혁 심의실로 인사이동

계획조차 수립 못했다고 변명"

있음

양자간 전담요구 (조정추진 중)"

망을 전국적 규모로 구축하여 경찰청, 소방청, 등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무선망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것을 이미 감사원이 2002 년 6 월 국무조정실에 "재난대비 종합무선체계
미확보를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갖출 것을 지적하였다.

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는 통합망 기술방식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 향후세부계획 수립 및 구축할 것이며, .운영을
주관할 부처는 국무조정실이 행자부 ,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이라고 답변하였다.

때 청와대에 개선사항으로 보고하여 "좋은 개선안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함.

실에 지시를 받고 있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안되어 위급시 재난예방과 복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안일주의 표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말아 지연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고 답변하였다.

월경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면 금년도부터 예산 등을 요구하여 2006 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 긴급구조기관 등의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를 위한 총괄조정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 국무조정실

내 용 : 국무조정실에서 2000 년 9 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고,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을 하고 있다.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 2 조(지방행정기관 등의 범위) 제 3 조(긴급구조기관의 범위) 규정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행정기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중앙 119 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은 재난관리법 제 34 조(동원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을 하여야 하고 각 구조기관 및 구조요원은 같은 법 제 27 조(현장지휘)의 규정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통제관 또는 지역긴급구조본부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현장지휘자의 지휘 또는 명령이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각 구조기관의 구조요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는 통합된 지휘무선통신체계(이하 종합지휘무선체계라 한다)를 확보하여야 단일 지휘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구조 및 복구작업을 할 수 있다.

우리 원이 2002 년 3 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8. 2. 3 14 : 58 분 발생한 평택시 청북면 한산1리 상수도 가압장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재난 신고를 받은 송탄소방서 등 각 기관들(경찰, 평택시, 군부대,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주파수가 서로 다른 무선통신설비를 갖추거나 심지어 무선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도 있어 긴급구조요원 605 명이 일사불란하게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법 제 27 조

(현장지휘)의 규정에 따른 각 기관간 지휘체계도 긴급구조본부장으로 일원화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대규모 사고(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현장에서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긴급구조기관(중앙 119 구조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과 재난관리책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청과 소방본부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독립된 TRS(Trunked Radio System) 무선통신망을 서로 다른 규격으로 국지적으로 구축 및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로 하여금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긴급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 제 29 조(긴급구조능력의 보강)의 규정 등에 따라 일원화된 종합지휘무선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총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종합지휘무선체계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 지정,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통신장비를 같은 지역에 중복 투자하는 등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될 것이 염려된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이 재난 발생시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확보를 위한 주관부처

지정,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

촉구 2 차 공문>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종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 추진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 국무조정실 본부

내 용 :

국무조정실에서 재난관리법 제 7 조 규정에 따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를 두어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주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 및 집중호우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관리법 제 2 조 등의 규정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소방, 경찰, 군 등

긴급구조기관들이 인명의 긴급구조와 재해 응급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 등을 지휘, 통제하는 긴급구조본부의 본부장 또는 통제관의 지휘 또는 명령이 각 구조기관 및 구조요원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는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신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구조 및 복구 등에 많은 지장이 있어 감사원은 2002. 6. 29 위 관서로 하여금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를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들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기관간 협의, 조정 등을 거쳐 위 무선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통신망의 중복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지 7 개월이 지난 2003. 1. 29 현재까지 각 기관간 일원화된 통합지휘무선통신체계 구축을 위한 주관 부처 지정이나 관계기관 협의, 조정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2002. 12. 24 동화정보통신(KT, SK C&C 와 컨소시엄 구성)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설치할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Trunked Radio System) 등 2 건의 TRS 구매계약(계약금액 계 16,588,830,000 원)을 맺고 TRS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2003년에는 울산지방경찰청에 TRS 를 구축할 계획(사업예산 3,531,000,000 원)으로 있고 육군본부에서는 과학화전투훈련용 TRS 를 구축할 계획(사업예산 3,258,211,000 원)으로 있다. 또한 통합방위본부에서는 2003. 1. 20 다른 방재기관은 제외한 채 행정자치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과의 합의만을 거쳐 "정부기관 통합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긴급구조기관인 경찰청이 다른 방재기관들과 서로 통화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독자적인 자가 TRS 망을 국지적으로 구축 또는 확장함으로써 재난현장 등에서
일사불란한 인명구조와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국가의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통신망의 중복구축 등으로 예산을 아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 ?? 및 ???

고, 작전, 구조, 안전운행, 유지보수용으로

(1,142 대) 등 10 여개 기관이 14,000 여대 운용

산 □ 주파수 낭비초래

을 통한 상호공조체계 확보추진

□ ??h vi

□ 주파수 낭비

○ 주관부처 지정 - 국조실주관 관계기관 회의개최시 결정('03.2.7)

양식등 일부 결정된 상태임

○ 통합대상 기관범위 결정통보 - 국조실□각 부처('03.7.5)

정통부간 실무회의를 거쳐

하여 각 기관에 통보

○ 사업추진관련 기준마련 통보 - 국조실□각 부처('03.8.13)

업추진 기준마련 통보

○ 사업추진 점담기관 결정검토 회의개최 - 국조실 ('03.8.21, 9.18)

관간 이견 없음

구 (조정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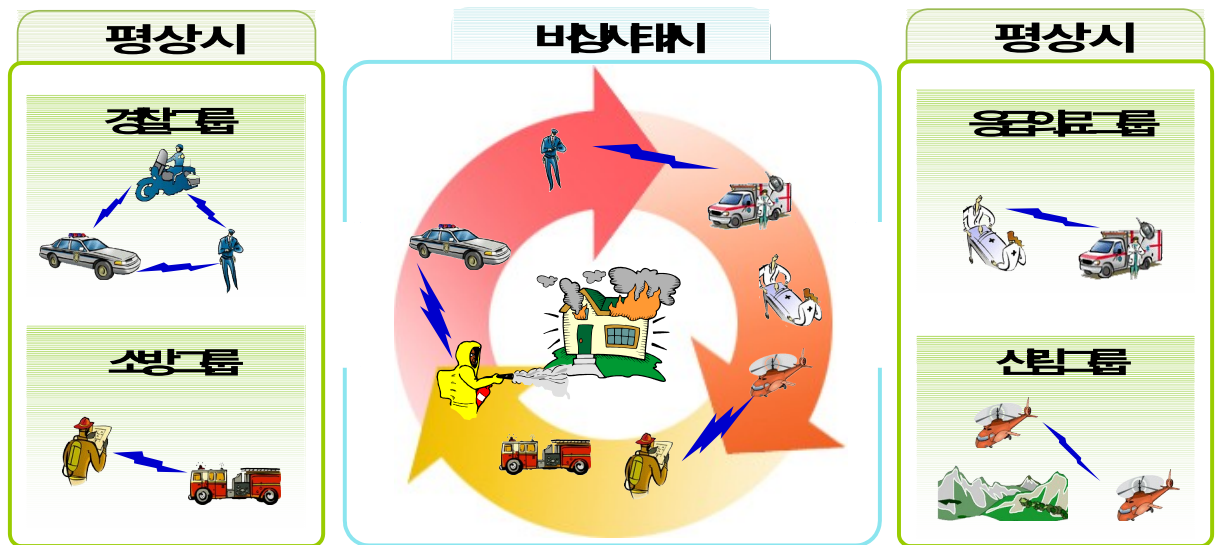
☐ ◆?리?(?) ??

성 확보

백

가동

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합



□ ?? ??리?

○ 기본계획 확정 - 정보통신부

- 소요예산 및 자원조달방안 등 일부 보완
- 통합 무선망운용 방법결정 등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행정자치부

- 통합 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및 망구성 설계 등
- 세부추진계획 외부 전문기관 용역
-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담, 사업비 확보

- 국방부에서는 산악지역의 군부대내 기지국 설치시
지원협조